

한국방송공사법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47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최민희 · 윤건영 · 김우영  
한민수 · 조인철 · 이재강  
박해철 · 김태년 · 이성운  
김남국 · 김영환 · 임미애  
이정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한국방송공사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

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관의 기재 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제1조의 설립 목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5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적 책임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에게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국민에게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제작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및 공사가 이전에 활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새로운 형식의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창달과 발전, 다양성 구현에 기여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운영·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장 이사회

제8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

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begin{array}{l} \text{각 교섭단체별} \\ \text{추천인 수} \end{array} = 6 \times \begin{array}{l} \text{해당 교섭단체} \\ \text{의석수} \end{array} \div \begin{array}{l} \text{각 교섭단체} \\ \text{의석수의 합계} \end{array}$
--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콘텐츠 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⑦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⑧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 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⑩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⑪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 이사회 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이사의 임기 및 퇴임)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의 책임 및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제13조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10.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1.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12. 손익금의 처리
  - 13.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 14. 정관의 변경
  - 15.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1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집행기관

- 제12조(집행기관) ① 공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둔다.
- ②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가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4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2. 라디오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남북교류방송,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한다), 국제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수익사업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제4장 회계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사·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2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

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사의 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

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6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 제5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와 징수

제28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

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30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29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할 때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9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

②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에”를 “「한국방송공사법」에”로 한다.